13.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O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7일
-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도시주택국장)
- O 회부일자 : 2023년 11월 21일
- O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3년 12월 13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창엽 도시주택국장)

□ 제안이유

○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군위군에서 기추진 중인 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O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O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익)

□ 주요 제정 내용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시장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청회 관련 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시장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공청회의 주재자선정, 주재자와 발표자에 대한 필요 경비 지급, 의견의 청취와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구광역시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과 의견 청취, 회의 개최와 협의결과 통보, 회의록 관련 규정으로, 협의회장은 시장, 협의위원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되며, 협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개최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해촉, 심의사항, 참석위원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6항에서 1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있으므로 기간 설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종합지원 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에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 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에 대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25조에서는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지원비율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위군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지역개발사업 관련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개발사업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되며, 현재 군위군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3건임.

※ 군위군 지역개발사업 현황

('23. 11월 현재)

	사 업 명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 간	비고
		중/합미	국토부	국토부외	^1경비	인 선 	
	합계 9건	297,314	62,300	89,406	49,910	95,698	
추진 중인 사업	소계 3건	90,350	12,700	_	6,350	71,300	
	①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	71,300				71,300	광 중지 중
	② 부계~의흥간 테마도로 개설	9,000	8,000	_	1,000	_	'25년 초 완료 예정
	③ 신촌생태미을 및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확포장	10,050	4,700	_	5,350	_	'24. 7월 완료 예정
완료 사업	소계 6건	206,964	49,600	89,406	43,560	24,398	
	① 박태산 트레킹코스	6,700	6,700		_	_	
	② 위천수변 테마파크	23,300	23,300	_	_	_	
	③ 부계능금 테마로드	8,600	8,600	_	_	_	
	④ 금양-화본 도로개설	11,000	11,000	_	_	_	
	⑤ (주)사유원	20,000	_	_	_	20,000	
	⑥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137,364	_	89,406	43,560	4,398	

○ 군위군의 재정자립도는 7.39%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 이므로 균특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대구시 재정자립도 현황 (2023년 예산 기준)

(출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자체수입	자치단체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당초]	
시시간세	(A)	(B)	(A/Bx100)	
본 청	3,525,001	8,237,600	42.79	
중 구	86,607	302,500	28.63	
동 구	143,576	828,800	17.32	
서 구	73,926	531,600	13.91	
남 구	48,892	460,000	10.63	
북 구	150,285	849,200	17.7	
수 성 구	227,354	795,075	28.6	
달 서 구	210,362	997,555	21.09	
달 성 군	257,188	878,600	29.27	
군 위 군	28,875	390,783	7.39	

* 전국: 45.02% / 경북 본청: 27.36%

○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군위군에서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낙후된 군위군의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 다만,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현재	추진	중인	군위군의	지역개발	\bigcirc 2	2017년	부터	2026	년까지	추진되는
사업	현황	은 어	떠한지?		,	사업은	총 9	개 사	업으로,	그 중 6개
					,	사업은	완료	가 되었	었고, 산	촌생태마을
					ו	및 풍력	넉발전	[단지	진입로	확•포장
					,	사업 등	총 3	3개의	사업이	추진 중임.

5. 토론요지

O 없음

6. 수정안 요지

O 없음

7. 심사결과

O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O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O 없음